

김웅 / 5월+6월 / 실전 GS / 7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3354	21.5	13.5	20	13.5	68.5	1	1.43%	70
543230	21.5	13	20	12.5	67	2	2.86%	
541168	20.5	14.5	20	11.5	66.5	3	4.29%	
544070	21.5	14	18.5	12.5	66.5	3	4.29%	
544449	20.5	13.5	21	11.5	66.5	3	4.29%	
543237	18.5	12.5	21	14	66	6	8.57%	
544096	19.5	13	21.5	11	65	7	10.00%	
529059	19	12.5	19.5	13	64	8	11.43%	
543259	18	12	20	14	64	8	11.43%	
543295	20.5	12.5	19	12	64	8	11.43%	
543632	20.5	13	20	10.5	64	8	11.43%	
544328	19.5	13	19.5	12	64	8	11.43%	
535211	17.5	14	18.5	13	63	13	18.57%	
541160	20.5	12.5	18	12	63	13	18.57%	
544413	19.5	11.5	20	12	63	13	18.57%	
544652	18	13.5	20	11.5	63	13	18.57%	
543311	20	14	18	11	63	13	18.57%	
544036	20.5	13	17	12.5	63	13	18.57%	
543203	19.5	13.5	18.5	11	62.5	19	27.14%	
535412	19	11.5	18	13.5	62	20	28.57%	
543730	18	12	19.5	12.5	62	20	28.57%	
543942	19	13	20	10	62	20	28.57%	
543296	18	13	17.5	13	61.5	23	32.86%	
543252	18.5	12.5	16.5	13.5	61	24	34.29%	
535329	21	13	15	11.5	60.5	25	35.71%	
543401	17	12	19	12	60	26	37.14%	
544033	17.5	14	18	10.5	60	26	37.14%	
528985	18	12.5	15	12.5	58	28	40.00%	
541737	18	12.5	16.5	11	58	28	40.00%	
544723	16	12.5	17.5	12	58	28	40.00%	
544100	14.5	13.5	17	12.5	57.5	31	44.29%	
541841	17.5	12	17	10.5	57	32	45.71%	
541918	18	12	16	11	57	32	45.71%	
543759	17.5	12	17	10.5	57	32	45.71%	
544398	18	13	15	11	57	32	45.71%	
541743	18	12	14.5	12	56.5	36	51.43%	
541754	17.5	10.5	16	12.5	56.5	36	51.43%	
542941	16	13	16.5	11	56.5	36	51.43%	
544442	17	13	16	10.5	56.5	36	51.43%	
544428	18.5	11	16.5	10	56	40	57.14%	
543187	19.5	12	16	7.5	55	41	58.57%	
544811	18	12	15	10	55	41	58.57%	
543270	16	13	15	10.5	54.5	43	61.43%	
541811	16	12.5	15	10.5	54	44	62.86%	
544803	15.5	12	17	9.5	54	44	62.86%	
535310	13.5	13.5	16.5	10	53.5	46	65.71%	
541765	17	10	15	11	53	47	67.14%	
541727	15	11	16	10.5	52.5	48	68.57%	
543977	17.5	12.5	14	8.5	52.5	48	68.57%	
541773	15.5	10.5	17	9	52	50	71.43%	
544023	18	11.5	12.5	9.5	51.5	51	72.86%	
541751	17.5	9	15	9.5	51	52	74.29%	
535461	16	10	13.5	11.5	51	52	74.29%	
542761	16	11	15.5	7.5	50	54	77.14%	

541798	14.5	9.5	16.5	8.5	49	55	78.57%
542868	13.5	10.5	15.5	9.5	49	55	78.57%
543253	14.5	11	15	8.5	49	55	78.57%
537426	18	10.5	14.5	4.5	47.5	58	82.86%
541759	16.5	10	15	6	47.5	58	82.86%
542772	15	11.5	10	10.5	47	60	85.71%
542854	14	7.5	15	10.5	47	60	85.71%
542691	12.5	6.5	16.5	11.5	47	60	85.71%
541957	15.5	8.5	15	6.5	45.5	63	90.00%
542201	15	7.5	16	7	45.5	63	90.00%
543210	12	11	13	9	45	65	92.86%
542865	14	9.5	13.5	7.5	44.5	66	94.29%
536108	14	5.5	15.5	9	44	67	95.71%
541749	17	10.5	15	0	42.5	68	97.14%
545216	13	9.5	13	7	42.5	68	97.14%
535882	16.5	10.5	9	3.5	39.5	70	100.00%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5월/실전GS/7회/1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디자인권 침해 및 요건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간접침해와 직접침해로 나누어서 판단하셔도 좋고, 침해에서 유사판단 위주로 서술한 답안도 비슷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설문 2 :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효심판이므로 이해관계 존부에 대해서 짧게 포섭해주시는 것이 인상 면에서 좋았습니다.</p> <p>설문 3 :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관해서는, 창작비용이성은 “창작수준” 이 낮은 경우에 위반인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해 각각 언급해주시면서 결론을 내린 답안의 인상이 좋았습니다.</p> <p>3. 소결</p> <p>디자인보호법은 다들 비슷하게 잘 쓰셔서 최대한 판례 문구 살려서 사안 포섭해주시고, 조문을 누락 없이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5월/실전GS/7회/2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복수디자인출원과 관련디자인출원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복수디자인에 대해서 요건 및 일반론을 서술하시고, 복수디자인출원 가능 여부를 포섭하시면 됩니다.</p> <p>설문 2 : 우선심사와 분할출원에 대해 크게 서술하신 답안이 가장 인상이 좋았으며, 그 외에 다른 논점들이 섞인 경우에는 주 논점이 약하게 보여서 감점 있었습니다.</p> <p>설문 3 : ‘제40조 1항 위반이다 > 분할하거나 보정해야한다’ 의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 논점을 크게 목차로 현출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부 논점이 크게 쓰여 있거나,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설문 4 : 단독디자인으로 보정한다는 결론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답을 틀리신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답안인상 및 법적근거 서술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답을 틀리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p> <p>주 논점을 강하게 / 목차로 어떤 내용 쓰시려고 하는지 잘 보이도록!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5월/실전GS/7회/3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답변서발송 / 무효심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구성으로 쓴 답안지보다 항변의 종류에 대해서 길게 서술한 답안이 더 많았습니다. 적절하게 강약 조절한 경우에는 모범답안처럼 서술한 경우와 같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설문 2 :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에 대한 누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무효의 항변으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에 대해서 언급한 답안은 적었습니다. 양자를 함께 적어주시면서 사안 포섭 시 “창작비용이성 흠결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필요도 없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고 포섭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답안이라 생각합니다.</p> <p>설문 3 : 특허법에서도 겹치는 논점이라 다들 잘 쓰셨습니다.</p> <p>3. 소결</p> <p>다들 잘 쓰셨으나, 설문 2에서 무효의 항변 누락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김웅/5월/실전GS/7회/4번</p>	<p>채점자</p>
	<p>이정은</p>
<p>1. 전반적인 총평</p> <p>유사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설문 1 : 일반론을 기재하는 문제입니다.</p> <p>설문 2 : 신규성 판단을 위해서 유사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이라는 점을 포섭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 >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 유사하다 > 신규성 흠결이다” 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풍부하게 사안 포섭하셨는지, 판례 문구를 활용해서 포섭하셨는지에 따라 달리 점수를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유사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풍부한 사안 포섭이 중요합니다.</p> <p>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p>	

<문제> 2.5

I. 선택 (1) 1.5

1. 디자인권 보호 범위

디자인권자는 공표된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 범주에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 92조)

2. 침해 요건 검토

① 등록디자인이 유효한 권이어야 하고, 정당한 원인 없이 공표된 보호범위 내의 디자인을 실시한 것을 말한다.

② 사안에서,甲의 디자인권은 유효한 것은 정제로 하고, 진사리 '판에'로 공표해서 실시도 하고 있다. 나머지 요건 검토한다.

3. 정당한 원인 인정 여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실시 중인데, 등록디자인이 아닌 사본 반으로 침해가 부정되면 된다.

4. 디자인 유사 여부

(1) 전체

동일·유사한 출품 전체에 디자인 유사 판단한다.

(2) 출품 동일·유사 판단방법

용도나 기능에 일치하면 동일한 출품, 용도는 같은데, 기능이 유사하면 유사 출품, 비유사 출품이지만 용도상 혼용될 수 있으면 유사 출품으로 본다.

(3) 사안



3

① 공이아 전사리 는 용도가 많은 것라 가망 등에 사용
라는 것 으로 서로 다르다. ② 기능도 유사하게 왔다.

② 용도상으로 서로 혼용 가능성이 있는 비유사 출품이다.

③ 따라서, 디자인 유사 판단 필요 없이, 비유사 디자인이다

5. 직접침해 여부

0.5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아서,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접침해 아니다.

6. 간접침해 여부

(1) 법적근거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출품의 영생기간
사용하는 물품을 근거리 생산, 출도 등을 하는 경우,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2)

1.5

(2) 사안

① 전사리가 부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출품 생산에만 사용된다면 별 사정이 없다,

② 간접침해도 아니다.

0.5

7. 결론

청회 주장은 보가하다.

II 뒷문(2) 6.5

1. 유희성판 청구 의미, 취지

부실한 권개 소멸을 위하여, 유희성판 청구 가능함 (제 112)



2. 창작

무엇은 이해관계인으로,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3. 본안

(1) 확대된 선출원주의 의미, 취지

출원일 전에 출원한 디자인으로 그 디자인 등록출원후에 출원일 후에 등록된 디자인과 일부가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하다. 선출원 디자인은 실용적으로 보지 않는다.

(2)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요건

① 동일한 사안에서 중복되지 않는다 (제 33조 3항 1호)

② 선출원 디자인 중 일부가 동일, 유사해야 한다.

이 때, 물품의 기능, 용도, 디자인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미와는 디자인이 충분히 표현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출원일 전 출원되고, 출원 후 등록된 사안이 있어야 한다.

(3) 사안

① 무리 2로 출원인이 다르다. ② 무리 중의 2개 컨셉이 대응된 장미꽃 모양은 극히 유사하다. 하지만, 선출원 디자인에 컨셉의 형태가 표시된 바 없고, 후출원 디자인이 상당부분이 선출원 디자인에 충분히 표현되었는지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모양이 극히 유사하다 하여,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 일부와 동일, 유사하다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출원일 전인

3

2025.7.1 출원되고, 출원 후 공개된 사경이 있더라도, 특허권
신출원주의 위반은 없다.

4. 결론
기각심결 예상된다.

III 소문 (3) 7.5

1. 관련규정

가) 신규성 의미 취지

출원 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하다 (제 33조 1항 각호) 공지되어 새롭게
있는 디자인이 특정 비타당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창작비용의성 의미, 취지

출원 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으로부터 디자인이 육안 보기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 불가하다.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에 디자인권 부여
하는 것은 부당하게 때문이다. (제 33조 2항)

2. 甲의 디자인 공개 여부

甲이 출원한 후 대응번호의 공고를 신청이 판에하여,
공표 실시 하여, 공표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되었다.

3. 신규성 위반 여부

(1) 법령준거

0.5



① 출원 권 권리 등이 권 디자인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 주체는 불문한다. ② 출원 권 권리 등이 권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한다. 이때, 유사 여부 판단시 위치는 '문중 등' 유사는 전제로 판단한다. '디자인 유사 판단시,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개별 용어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 대비 관철하여 보는 방법으로 하여금 상이한 미감을 느끼게 하도록로 판단한다.

(2) 사안

① 앞서 살펴본, '공기'와 '전사기'는 용도가 다르고, 문중이 활용 가능성도 없어서 비유사한 문중이다.

② 따라서, 공기의 유사하든 관계없이, 비유사 디자인이어서, 신규성 위반은 아니다.

4. 창작비용이성 위반 여부

(1) 범성근거 - ① 신규성 갖춘 디자인에 한해 판단한다 (제 7조 2항 관호)

② 출원 권 권리 등이 권 디자인이 있는, 권리 주체는 불문한다. ③ 용이 창작판단시, 위치는 권리 등이 권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모방했거나, 상업적·기술적 변형이 불과 하거나, 가하여진 변화나 흔한 창작 수법·표현방법이 재래적 양식에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말한다 한다. ④ 이때, 동일·유사 문중 간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2) 사안

① 사중에 2의 출원 권 권리 디자인이 용이 되었다. ② 이때,

전4리가 되는 장이꽃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모양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고, 음종만 달리 하여, 상급락.기능곡 변형이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② 따라서, 쉽게 진용한 것으로, 창작 비용이성 부정된다.

5. 결론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보호될 수 있다

< 문제 - 2 > 135

I. 질문 (1) 3.5

1. 부수디자인 등록출원 타의, 취지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100개 이내 디자인을 1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예 412]

2. 모집

① 제 40조 1항이도 불구하고, 산업통상 4인부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분류규율로 출품 목록에서 같은 출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에 대해 가능하다. ② 100개 이내의 디자인이어야 한다. ③ 1 디자인이라 분기하여 출원해야 한다.

3. 사안 - 가능

① A는 모자에 대한 전체 디자인으로, 디자인 대상이 되는 출품은, (모자'로, 로카르노 협경이 다른 출품류 제 2류이다. ② 디자인 B, C, D는 부분 디자인인데, 부분 디자인의 디자인 대상되는 출품은, 마찬가지로 모자이다.



㉔ 마쳐, ~~모두 2유에 포함~~ ㉕ 총 4개로 100개
 이사이며, ㉖ 디자인마다 분기하여 표현하면,
 ㉗ 특수디자인등록출원 가능하다.

II 실문(2)

1. 관련 규정 3

(1) 우선심사 신청

특허청장은 출원 후에 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어떤 자가
 옳다기 출원 디자인 소개한 있다면 신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에게 우선심사 하게 할 수 있다 (제 61조 1항)

이 때, 특수디자인등록출원 기 대해 우선심사 하게 할 수 있다 (제 61조 2항)

(2) 분할출원

특수 디자인 등록출원 한 경우, 디자인 등록출원 일부는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분기하여 출원할 수 있다.
(제 58조 1항 2호)

2. 사안 - 가등

① 권리 디자인 A 기 대해 우선심사 사제가 있는 경우,
 A만 우선심사 신청 가능하다. ② 또한, 특수디자인등록출원
 으로서, 분할 디자인인 A만 분할할 수 있다.

III 실문(3) 2.5



1. 예상되는 기밀유지

(1) 법적근거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제 40조 1항)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한다 (제 41조)

(2) 사안

① A는 최초 출원시 부분 디자인 2개 D를 하나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도면이 표현했다. ② 디자인, 복수디자인
등록출원 생략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③ 또한,

이때 따라 1디자인 1등록출원주의 위반도 함께 경정이유가
된다.

2. 극복방안

(1) 법적근거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로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변경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시 기재사항, 도면 등을 보정
할 수 있다. (제 48조 1항) ② 1디자인 ~ 1등록
출원주의 위반의 경우, 분할 출원할 수 있다 (제 50조 1항)

(2) 사안

①부분 디자인 C 또는 D는 다른 일련번호 디자인으로 분리
하여 도면이 표현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②또는, C 또는 D는 원출원까지 삭제 보정하고, 새로운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 이때, 원출원의 디자인 수를

(1.5)



4미터 3으로 보정해야 한다.

IV 섰 (4) 3.5

I. 예상되는 기결이유

(1) 합성근거

① 심사관은 일분상사등록출원으로서 352이 따른 관련디자인 등록 출원이 62조 2항 각호 또는 62조 3항 어느 하나 위반사 기결결정 한다 (제 62조 3항)

②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기결이유에 해당한다. (제 62조 3항 5호)

③ ~~상사기준은~~,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은 등록받거나 하는 대상과 행위가 상이하여, 선출원주의 · 관련 디자인 적용 안된다. 다만, 최근 개정 상사기준, 부분 디자인에서 등록 받거나 하여 아니하는 부분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선출원주의 관련 디자인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2) 사안

① 모자라 모자챙 · 모자 받침 · 모자 뒤끈은, 모자라 대비시, 부분 디자인이 등록받지 않더라도 부분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② 디자인, 개정 상사기준이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 적용이 불가하고,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나, 62조 3항 5호 위반으로 기결될 것이다.

2. 중복방안

(1) 보강

관련디자인 등록출원은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강 가능하다. 영도 같다. (2기 482 2항)

(2) 사안

B, C, D 를 단독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보강하면 된다.

<문제-3>

20

I. 심문 (1)

1. 침해 여부 검토

등록 후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건축용 기둥집 반링대'를 실시한 있어서, 침해권 판명된다.

2. 甲의 등록디자인 하자 검토

사실용 행방이 강판다, 사상이용 행방의 취지는 서로 맞대어 일반적인 문은 받아 일체화시킨 행방과 모양의 조합으로, '창작비용이성' 형식으로 판명된다.

3. 2의 조치

(1) 비유사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만약, 다수기본 여적이 있다면, 가능하다.

(2) 관련 행방 기재한 답변서 제출

① 창작비용이성 취반으로 원어 범위 부정을 불가능하다. (취1제)

② 다만, 자유성이 디자인이라는 취지로 행방 가능하다. (취1제)



(3) 무효상관항구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무의 등록 디자인에 대해 무효상관 항구 가능하다. (제 121조)

(4) 권재범의 확인상관 항구
창제소송에서 유래한 증거자료 확보 위해, 권재범의 확인상관 항구 가능하다. (제 122조)

(5) 허락, 양도
실시허락 받거나, 권리 양수도 가능하다.

(6) 기타
타회, 로깅, 증쇄, 추가 선행문헌 조사·영증적 등이 가능하다.

II 본문 (2) //

1. 권재범의 확인상관 의미, 취지
디자인권의 객관적인 존재방식이 특허청의 등록 판단을 위해 상판권이 확인 가능 수 있다.

2. 공부
2등 공고장 받은 자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공법하다.

3. 본안 판단
(1) 창작비용이성 의미, 취지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모호히 위해, 출원 전 공여 등이 온 디자인 으로부터 밀기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은 등록 불가하다. (제 33조 2항)

(2) 창작비용이성 판단방법 취척

공리성이 된 디자인, 또는 주지예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거나, 생업적, 기능적 변형이 불과하거나, 가하여질 변화나 흔한 창작방법,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창작성이 낮은 디자인인 경우, 창작 비용이성 위반이다.

1.5

(3) 창작비용이성라 무효의 항변 취척

① 등록 디자인이 공리성이 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무효항변 관여 없이 권리병리가 부정된다.

② 하지만, 등록 디자인이 출원 전 공리성이 된 디자인 또는 주지 형제 등을 기초로 쉽게 창작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병리로 부정할 수 없다.

2

(4) 과유설계 디자인 항변 취척

권리병리 확인성 판에서, 불서해인 것은 디자인이 출원 전 공리 디자인이나 주지 형제 또는 이등이 조합에 대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이등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필요성 없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병리가 유효하다.

2

(5) 사안

1) 창작비용이성 위반 여부

① 甲의 등록 디자인은 시각통 형성의 장편과 시각기능 형성의 부속을 서로 맞대어 일반적인 옷은 벗어



맞추어진 형상 모양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㉓ 이때, 사각형 형상의 공간과 사각이동 형상 목적은 모두 주어진 형상이다. 또한, 이들의 결합 또한 일반적인 뜻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에도 특성이 없다.

㉔ 따라서, 주어진 형태를 결합한 것으로, 가려진 변화가 생김과 기능적 변형이 불라하거나, 디자인이 복한 분야에서 동상의 리스를 가진 사물에게, 흔한 창작성·표현방법이 해당할 것이다. ㉕ 따라서, 창작비용이성 위반이다.

2) 무효의 항변 인정 여부

등극 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 위반으로, 무효의 항변은 불가하다.

3)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인정여부 - 2의 규정 타당성

① 2의 특허대상 디자인이 등극 디자인과 동일하다면, 이비한 디자인들은 동등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주된 형태로, 누구에게도 예상할 수 없는 사용처 분포가 없다

한다. ②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하인과 같은 것이라,

③ 2의 특허대상 디자인은 등극 디자인과 동일하며, 창작비용이성 부감하므로,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 인정될 것이다.

(b) 소결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으로, 등극 디자인과 이비한 필요 없이, 창작비용이성 부감하므로, 창작비용이성 위반하지 않는다.

4. 결론

0.5

- ① 2의 이유와 2의 이유의 결론의 구별을 정명하다.
- ② 따라서, 인용성분 기재된다.

III 결론(3)

1. 문제점

S

- ① 무호성명 행명하는 경우, 디자인권도 소중하여 인정한다.
(예 1212 ~~구분~~ ~~분류~~) ② 소중하므로 소명한 디자인권의 권제범위로 후인할 이익이 없으므로 문제된다.

2. 권제범위 확인성판의 후인의 이익

- ① 행정성판으로써, 권제범위 확인성판도, 후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② 다만, 행정성판이 심사 과정과 동일한 정도의 후인의 이익을 요구하면 안된다. ③ 분별 해설이 유호. 구별한 두면이면 인정할 것이다.

3. 등록디자인 소명된 경우 후인의 이익 ~~(해설)~~

- ① 권제범위 확인성판도,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권제범위 후인을 위한 것이다. ② 따라서, 소중 인정할 경우 분별 해설, 관계 소명할 경우에도, 후인을 구별 이익이 없다.

4. 검토

- ① 디자인권이 강제 소명된 경우에는, 후인의 이익에 대해 논쟁이 없을 수 있다. ② 하지만, 소중 소명된 경우에는,



특정 형상을 구분 이익이 없다는 판례가 타당하다

5. 결론

특인의 이익이 없어서, 강화성질 인정된다.

<문제-4>

135

I. 결론 (1)

1. 디자인 유사판단 원칙 제시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 분해하여 대비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란하여 보는 방향으로 하여금 상이한 미감을 느끼게 하도록 판단한다.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사부적인 점이나 다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게 본다.

2.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고려사항 제시

① 물품 특성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형태 변화도 창작하여 유사 여부는 판단한다.

② 이때, 보는 방향이 다나 미감이 같게도 느껴지고, 다르게도 느껴지는 경우, 같이 느껴지는 방향을 대비 판단한다.

3. 사안

건물 처양막 방향의 간 유사 판단시, 건물 처양막 방향의 형태 변화 물품 특성상 나타났는데,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II 질문(2) 105

1. 무효심판 청구 이유, 취지

부당한 청구 요건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인 무효심판 청구 가능하다 (제 121조)

2. 적부

① 같은 무에게 황해 중의 오류는 정당한 받은 대로, 청구 요건이 적중하여도 현상과 어긋나게 갖는다.

② 적법하다.

3. 불만 판단

(1) 선유명 의미, 취지

공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불가하다.

(2) 제 1항 1항 강호) 이 공제되어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 등록, 배타적 효과 인정받을 수 없다.

(2) 디자인 유사 판단 전제

① 동일, 유사한 문종 안에서 판단한다. ② 선형 디자인과 동일한 선을 포함할 방향이다.

(3) 디자인 유사 판단 원칙 취지

디자인은 이두는 구성요소로 개별 문해에 판단할 것이

아니나, 의미는 전체 대미 관측하여 보는 사항으로

하위용 상이한 미감을 느끼게 하도록 판단한다.

(4) 사항

1) 선형 포함 방향 문종 등록



① 상부 인형 지지대가 결합하는 돌기부다 하부 사각 지지대가 결합하는 광창부로 구성된다. 상이 돌기부다 광창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각 지지대가 결합한다.

② 이라 같이 슬롯 특성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2) 등록 디자인 A 와 변형디자인 대비

① 양 디자인은 프레임과 광창부를 연결하는 부속에서 형상 및 상하부 형태의 차이, 광창부가 동일한 구조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3.5

② 하지만, 상부가 독특한 변형 형상 이주는 2개 프레임 사이가 조립 단계 두로 한동안 큰리 성하고 돌기부를 구성한, 사각바르인 지지대기 기둥 수 있게 같이 큰 광창부 형성한, 3번째 · 4번째 큰리 사이 프레임에서 연결된다는 구성점이 있다. 같은 구조도 거의 비슷하다.

3) 모조 - 사용상태도라 대비

1.5

이라 같이, ① 등록 디자인 A라, A라 사용상태도라 선형 디자인 대비시, ② 변형 디자인은 펼쳐진 형태의 디자인으로, ③ 이라 비강이 같기 느껴지는 등록디자인 A라 사용상태도라 변형디자인을 대비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 특징이 유사하여, 유사하다.

(5) 결론

0.5 선형성 위반이다

4. 결론



6.5

인용상권 예상된다.

